

**나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9-352호(2019.12.27.)로 변경승인된 나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김해 나전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사업시행자가 산업용지 일부를 사용하고, 잔여면적은 국지도60호선 도로사업구간 내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의 용지 확보와 원활한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용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77번지 일원
- 면 적 : 67,679m<sup>2</sup>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9년~2020년 12월 31일  
                  **변경) 2009년~2021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C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금속 제조업(C24),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대표사업시행자 : (주)에스엠디 대표 김광식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131, 01호(대청동)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에스엠디	김광식	김해시 대청로 131, 01호(대청동)
유한회사 범진금속	박만선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99번길 22-60
(주)진성엔지니어링	강정수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288-4
(주)협진피엘	임명섭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78-60
(주)보원산업	이창훈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60-61
사노코퍼레이션	김무성	김해시 어방동 1067-8
(주)인테크케미칼	박종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725-1
(주)성훈테크	정병삼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288-5
한두원테크	최용빈	김해시 변화1로 19번길 14-1
승진산업	오승현	김해시 삼계동 1069-1
투지텍(주)	김영중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 214
삼광하이테크	김영욱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738-1
(주)해성정밀	성낙동	김해시 김해대로2553번길 46(어방동)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합 계	임야	전	답	구거	도로
면 적(m <sup>2</sup> )	67,679	64,338	293	2,566	142	340
필 지 수	53	36	1	13	1	2
구성비(%)	100	95.0	0.4	3.8	0.3	0.5

나. 소유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합 계	사유지	국유지		
			소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면 적(m <sup>2</sup> )	68,161	67,197	482	317	165
필 지 수	56	50	3	2	1
구성비(%)	100.7	99.3	0.7	0.5	0.2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7,679	-	67,679	100.0	
산업시설용지	47,733	-	47,733	70.6	
공공시설용지	19,946	-	19,946	29.4	
공공하수처리시설	616	-	616	0.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363	363	0.5	
	가압장	112	112	0.2	
저류시설	295	-	295	0.4	
완충녹지	3,416	-	3,416	5.0	
도로	13,934	-	13,934	20.6	도로사면 790m <sup>2</sup> 포함
주차장	1,210	-	1,210	1.8	2개소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 총괄표

(단위 : 개, m, m<sup>2</sup>)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893	13,144	1	776	12,377	1	117	767	-	-	-
중로	1	776	12,377	1	776	12,377	-	-	-	-	-	-
소로	1	117	767	-	-	-	1	117	767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19	국지 도로	763	생림면 나전리 산373	생림면 나전리 산277-14	일반 도로	-	김해시고시 제2010-62호	-
기정	소로	2	82	6.5	국지 도로	117	생림면 나전리 283-3	생림면 나전리 산277-12	일반 도로	-	김해시고시 제2015-113호	-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10	-	1,210		
기정	6-1	주차장	노외 주차장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288-2 일원	782	-	782	김해시고시 제2010-62호	
기정	6-2	주차장	노외 주차장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77-13 일원	428	-	428	김해시고시 제2010-62호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416	-	3,416		
기정	6-9	녹지	완충녹지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81 일원	3,416	-	3,416	김해시고시 제2010-62호	

4)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5	-	475		
기정	6-3	수도공급설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77-1	363	-	363	김해시고시 제2010-62호	배수지
기정	6-13	수도공급설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81	112	-	112	김해시고시 제2010-62호	가압장

5) 우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5	-	295		
기정	6-1	우수지	저류시설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81 일원	295	-	295	김해시고시 제2010-62호	

6) 하수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6	-	616		
기정	6-8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81 일원	616	-	616	김해시고시 제2010-62호	

7) 상수도계획

○ 사업지구에서 필요한 생활용수는 21.6m<sup>3</sup>/일이며, 공업용수는 없음

8) 오수계획

○ 사업지구에서 일최대계획오수량은 19.0m<sup>3</sup>/일임

9)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내 총 전력사용량은 3,081.5(MWh/년)로, 전력공급은 공급자인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공급

10) 통신공급계획

○ 본 산업단지의 통신 소요회선수는 963회선으로,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공급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 19,582백만원, 자체자금 5,885백만원, 차입금 9,297백만원, 공동사업투자금 4,400백만원

나. 연차별투자계획

-기정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019년	2020년
합 계	19,582	8,160	3,266	1,952	2,881	1,039	1,100	414	770
자체자금	5,885	1,444	2,366	952	200	339	400	184	-
차입금(은행)	9,297	6,716	900	-	1,681	-	-	-	-
공동사업투자금	4,400	-	-	1,000	1,000	700	700	230	770

-변경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019년	2020년~2021년
합 계	19,582	8,160	3,266	1,952	2,881	1,039	1,100	414	770
자체자금	5,885	1,444	2,366	952	200	339	400	184	-
차입금(은행)	9,297	6,716	900	-	1,681	-	-	-	-
공동사업투자금	4,400	-	-	1,000	1,000	700	700	230	77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 :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합계	47,733	100.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C13)	1,659	3.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4,203	8.8	
1차금속 제조업(C24)	9,718	20.4	
전기장비 제조업(C28)	2,230	4.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0,657	2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0,336	2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8,930	18.7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7,679	-	67,679	100.0	
산업시설용지	47,733	-	47,733	70.6	사업시행자 귀속
공공시설용지	19,946	-	19,946	29.4	
공공하수처리시설	616	-	616	0.9	사업시행자 귀속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363	363	0.5	김해시 귀속
	가압장	112	112	0.2	김해시 귀속
저류시설	295	-	295	0.4	사업시행자 귀속
완충녹지	3,416	-	3,416	5.0	김해시 귀속
도로	13,934	-	13,934	20.6	김해시 귀속
주차장	1,210	-	1,210	1.8	사업시행자 귀속

나. 시설물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단지내도로	B=15.0m	760.0m	김해시에 귀속	보도블록포장 및 경계석 포함
	L형측구	차도용	1465.0m		
	횡단측구	0.6x0.6	30.0m		
	단지내도로	B=6.5m	117.0m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우수	원형우수관	D=1000m/m	734.0	김해시에 귀속	
		D=500m/m	192.0		
		D=400m/m	12.0		
		D=300m/m	24.0		
	D=200m/m	282.0			
우수BOX	1.5x1.5x1.0	76.0			
우수맨홀	0.8x0.8x1.0	4.0EA			
구조물	역L형옹벽	H=1.0~5.0	99.7	"	
	보강토옹벽	H=1.0~10.0	333.7		
	전석쌓기	H=1.0~3.0	533.0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오수	오수맨홀	D=900m/m	22.0EA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오수맨홀	0.6x0.6x1.0	4.0EA	
	오수받이	410x510x600	8.0EA	
	오수관	D=200m/m	848.0m	
	오수관	D=150m/m	81.0m	
부대 시설	방호벽	H=1.0	427.0경간	김해시에 귀속
	가드레일	H=1.0	60.0 경간	"
전기	가로등	H=9.0M, NH250W	31.0EA	"
	가로등 제어함	100A	1.0EA	"
	신호등		1EA	"
	신호등 제어함		1EA	"

15.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7,679	-	67,679	100.0	
일반공업지역	67,679	-	67,679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1	나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77번지 일원	67,679	-	67,679	김해시고시 제2010-62호 (2010.06.03.)	

다.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도면 번호	획지 번호			
-	A-4 A-5 B-2 B-3 B-5 B-6	용도 허용용도	A-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A-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차금속 제조업 (C24)
			B-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B-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B-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B-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 번호	획지 번호				
-	C-1 C-2 C-3 C-6 C-7 C-8	용도	허용 용도	C-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차금속 제조업 (C24)
				C-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C-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차금속 제조업 (C24)
				C-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 제조업 (C28)
				C-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C13)
				C-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불허 용도	기 정  변 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단,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전량 위탁처리는 제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득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단,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물의배치 및 형태		• 산업시설용지내에 「건축법」 제49조 제①항에 준하는 피난과 소방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 경		• 대지내 공공조경은 안전공간 및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함 (법면 및 옹벽상단부에서 1.5m 확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 번호	획지 번호					
-	B-4	용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불허 용도	기 정  변 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단,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전량 위탁처리는 제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득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단,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물의배치 및 형태		• 산업시설용지내에 「건축법」 제49조 제①항에 준하는 피난과 소방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 경		• 대지내 공공조경은 안전공간 및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함 (북측 법면 및 옹벽상단부에서 1.5m 확보하고 동측 법면 및 옹벽상단부에서 3m 확보)				

※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기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수도공급설비, 우수지, 하수도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시설용지 및 주차장

제3장 기타사항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나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며,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나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역에 적용한다.

### 제 3 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3장 기타사항은 모든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 및 주차장에 각각 적용한다.

### 제 4 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④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는 용도라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나.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 다.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라.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마.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

다.

바.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사.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제2장 산업시설용지 및 주차장(변경)

### 제 1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제 내 용
산업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C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금속 제조업(C24),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단,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전량위탁처리는 제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득하는 사업장</li> <li>- 변경)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단,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전량위탁처리는 제외)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li> </ul> </li> </ul>

### 제 2 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300	-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산업시설용지의 용적률은 300%이하, 건폐율은 70%이하로 한다.

③ 산업시설용지내 건축물은 기업이 자유롭게 건축하도록 유도한다.

### 제 3 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①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② 건축물이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 ③ 산업시설용지내에 「건축법」 제49조제①항에 준하는 피난과 소방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 4 조 (공공조경)

- ① 대지내 공공조경은 안전공간 및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법면 및 옹벽상단부에서 1.5m 확보, BL4 북측법면 및 옹벽상단부에서 1.5m 확보하고 동측법면 및 옹벽상단부에서 3m 확보)

### 제 5 조 (주차장)

- ① 개별 산업시설용지내 주차장은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제3장 기타사항

### 제 1 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①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소재를 활용토록 한다.
- ②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금지하고, 가로형, 문자형, 지주형 간판을 권장한다.
- ③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김해시 조례등에 따른다.

### 제 2 조(가이드라인)

-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옥외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본 지침과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김해시와 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

### 제 3 조(조경 및 식재에 관한 사항)

- ① 가로수 향토수종에 맞는 벚꽃나무로 식재하도록 한다.
- ② 단지내 비탈면 복구는 경관 및 차폐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별하여 소나무 등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 제 4 조(산업시설용지 진·출입구에 관한 사항)

- ① 산업시설용지 진·출입구에 곡선반경 R=12.5이상의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지정(개발계획)구역계 좌표조서(변경없음)

번호	X좌표	Y좌표	번호	X좌표	Y좌표
1	189949.8300	199456.1380	34	189446.8216	199490.6566
2	189934.6950	199469.5620	35	189447.3430	199481.3983
3	189879.5900	199459.6470	36	189446.5873	199472.0732
4	189795.7290	199499.6600	37	189444.9602	199461.8228
5	189738.1910	199526.2515	38	189444.8167	199451.3257
6	189720.3930	199534.4770	39	189445.2444	199443.5853
7	189708.7650	199539.8410	40	189446.1372	199433.9613
8	189663.1885	199563.7700	41	189447.8530	199431.9870
9	189649.6960	199540.1354	42	189449.7890	199425.1870
10	189633.1190	199511.1880	43	189454.9080	199416.0510
11	189622.9810	199492.0150	44	189452.4250	199409.2390
12	189602.4800	199453.2420	45	189455.4460	199404.0793
13	189538.6860	199490.3990	46	189463.0277	199391.1996
14	189537.1720	199488.8800	47	189467.5172	199383.4625
15	189539.7140	199487.4390	48	189478.6031	199378.4059
16	189535.1830	199482.5320	49	189505.5968	199375.9302
17	189530.8690	199477.8300	50	189584.9113	199368.7304
18	189531.7810	199471.5660	51	189593.1000	199371.8070
19	189520.5010	199470.8470	52	189600.9725	199369.9355
20	189515.7480	199470.5520	53	189646.6706	199372.7687
21	189503.6300	199458.7830	54	189651.5920	199374.1710
22	189486.0250	199459.3532	55	189662.7023	199379.9630
23	189469.4810	199459.8890	56	189671.8215	199375.7122
24	189459.9590	199460.5760	57	189725.9635	199350.1516
25	189460.9250	199466.3820	58	189765.6567	199329.8485
26	189461.5010	199470.4020	59	189840.9386	199287.3596
27	189462.2470	199479.6070	60	189850.5081	199281.9454
28	189463.4510	199487.1460	61	189873.6942	199316.8589
29	189466.4370	199496.3830	62	189896.5102	199377.8493
30	189469.3960	199500.1050	63	189931.5181	199430.5640
31	189460.3880	199496.0910			
32	169457.6700	199499.1030			
33	189450.1384	199494.7302			

1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 붙임1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 유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나전일반산업단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19,156㎡

○ 규 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 (m)	폭원 (m)	면적 (㎡)	길이 (m)	폭원 (m)	면적 (㎡)	
도 로	-	-	13,144	-	-	13,144	
중로2-1	776	15~19	12,377	776	15~19	12,377	
소로2-82	117	6.5	767	117	6.5	767	
주 차 장	-	-	1,210	-	-	1,210	
6-1	-	-	782	-	-	782	
6-2	-	-	428	-	-	428	
완충녹지	-	-	3,416	-	-	3,416	
6-9	-	-	3,416	-	-	3,416	
수도공급설비	-	-	475	-	-	475	
6-3	-	-	363	-	-	363	배수지
6-13	-	-	112	-	-	112	가압장
유수지	-	-	295	-	-	295	
6-1	-	-	295	-	-	295	저류시설
하수도	-	-	616	-	-	616	
6-8	-	-	616	-	-	616	공공하수처리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주)에스엠디 대표 김광식 외 12개사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131, 101호(대청동)

5. 사업기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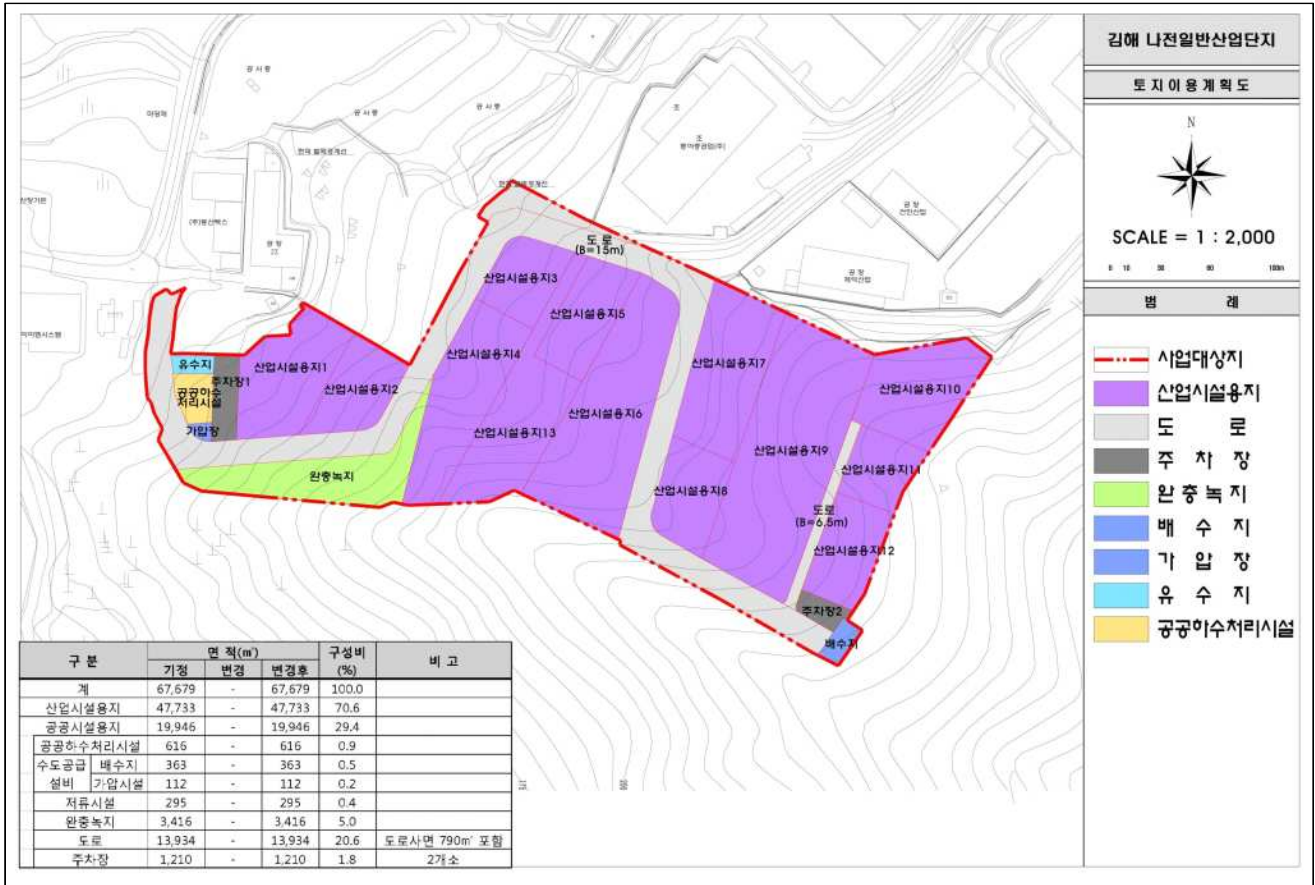
○ 기정) 2009년~2020년 12월 31일

변경) 2009년~2021년 12월 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 생략

□ 첨부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 업종배치계획도(변경없음)

